

상 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2024. 1.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상표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711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심판참고인의 선정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과 관련된 규정 신설

1) 심판장의 결정(직권사항)으로 의견청취를 결정하고, 참고인 선정시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회 등 공공성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참고인은 서면으로 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심판장은 제출된 서면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사전 송달하고 서면 의견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부여하며,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하도록 함

3)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하고,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불산입함

나.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서 서식

(별지 제2호) 정비

의견서 서식(별지 제2호)에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제127조, 제141조의2(2024. 3. 15.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9.~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 심리에 있어서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공중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지정할 때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는 그 밖의 참고인을 선정한다.

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참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8조의3(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등) ①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참고인은 심판원장이 정하는 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한다. 다만 비밀유지가 필

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게시한다.

제68조의4(참고인의 수당 등) ① 법 제141조의2제4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류 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 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mm × 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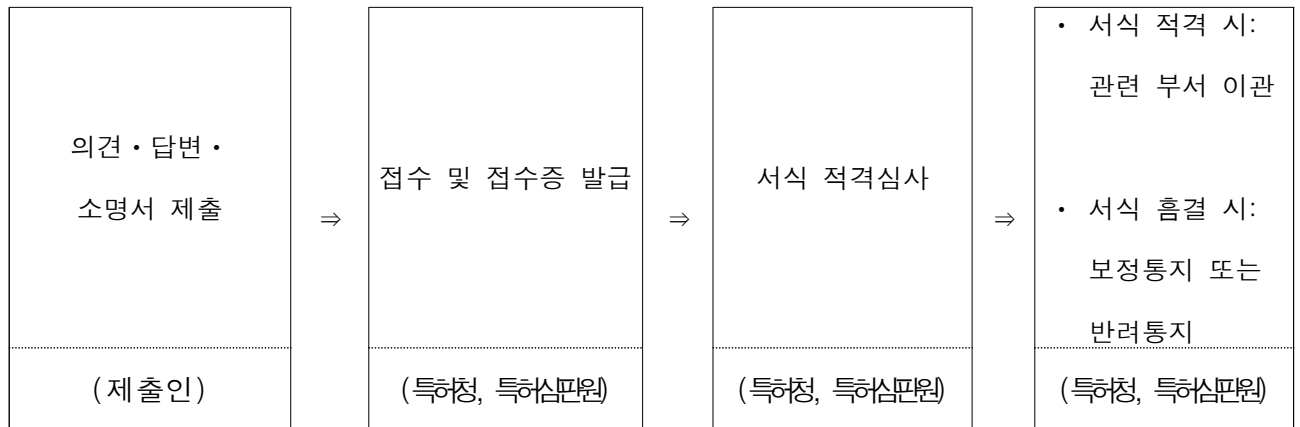
(뒤쪽)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서류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나,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상표법」 제59조, 제127조 제5항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분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제133조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상표법」 제143조

	경우	
이의답변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제66조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이의신청재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당사자가 심판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68조 의3제3항

2. 처리절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8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u> <u>심판장은 심판사건 심리에 있어</u> <u>서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공</u> <u>중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u>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u> <u>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u> <u>다.</u> <u>② 심판장은 법 제141조의2제1</u> <u>항에 따라 참고인을 지정할 때</u> <u>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u> <u>는 공신력이 있는 그 밖의 참고</u> <u>인을 선정한다.</u> <u>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u> <u>참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u> <u>된 사람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u> <u>해야 한다.</u>
<u><신 설></u>	<u>제68조의3(참고인의 의견서 제출</u> <u>등) ①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u> <u>해 선정된 참고인은 심판원장이</u> <u>정하는 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u>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u> <u>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u> <u>의견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u>

<신 설>

면 또는 구술)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한다. 다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게시한다.

제68조의4(참고인의 수당 등) ① 법 제141조의2제4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17